

강령 및 당헌 개정 전후 비교표

- 2024년 정기당대회에서 개정 (2/24(토))

강령 개정

개정 전	개정 후
2022년 2월 5일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당대회 개정	<u>2022년 1월 15일</u> 2022년 임시당대회 개정

당헌 개정

제3장 당원총회 및 대의기관

제1절 당원총회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8조(당원총회)(2022.1.15. 신설) ①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당원총회는 당의 주요 의제에 대해 전 당원의 참여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다. 그 안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</p> <p>2. 당원 1/5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한 안건</p> <p>③ 당원총회는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당원 1/5 이상의 서명 제출로 성립한다.</p> <p>④ 당원총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지위와 구성)</p> <p><u>①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.</u></p> <p><u>②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모든 당권당원으로 구성된다.</u></p> <p><u>③ 당원총회는 소집 총회 또는 당원 총투표로 진행한다.</u></p> <p>제9조(권한) <u>당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</u></p> <p><u>①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·의결</u></p> <p><u>② 당권당원 1/5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한 안건의 심의·의결</u></p> <p>제10조(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) ① 당원총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</p>

	<p>인을 둔다. 당원총투표는 의장 1인을 둔다.</p> <p>② 당원총회 의장은 제9조1항에 의한 것일 경우 당대회의장으로 하고, 제9조2항에 의한 것일 경우는 당대표로 한다. 부의장은 의장의 추천으로 당권당원 가운데 선출한다.</p> <p>③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회의 당원총회로 하고,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단, 당원총투표에 대한 직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.</p> <p>제11조(소집) ① 당원총회는 당대회의 의결 또는 당권당원 1/5이상의 서명 제출로 소집한다</p> <p>② 당원총회의 소집은 그 안건이 제9조1항일 경우 당대회의장이 소집하고, 제9조2항일 경우 당대표가 소집한다.</p> <p>③ 당원총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</p>
--	--

제12장 보칙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2장 보칙</p> <p>제38조(의결정족수) ① 강령과 당헌 제1조의 제정과 개정,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p> <p>② 강령을 구체화한 부속강령과 제1조 이외의 당헌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p> <p>③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p>	<p>제12장 보칙</p> <p>제38조(의결정족수)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② 강령을 구체화한 부속강령과 제1조 이외의 당헌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③ 강령과 당헌 제1조의 제정과 개정,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<u>의결한다.</u></p>